

「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6. 6. 29. 제정 판 (시행 2016. 3. 1.) → 2019. 5. 13. 개정 판 (시행 2019. 5. 13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311/compare?from=758&to=1139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8:18:20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추천이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.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시 <u>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및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</u>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추천이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.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시 <u>7일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회의 일정 등의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하여야하며</u>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u>〈개정 2019-05-13〉</u>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 추천위원회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. 다만,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u>〈신설 2019-05-13〉</u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추천이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.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회의 일정 등의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하여야하며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추천위원회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. 다만,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